장수군 노인 이 • 미용비 지원 조례

[시행 2023.01.01] (일부개정) 2022.12.15 조례 제2634호

> 관리책임부서명: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: 063-350-211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「노인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이 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노인 이·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장수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자로 한다. 다만,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. [제목개정 2022. 12. 15.]

제3조(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) 장수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.

제4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(이하 "장수사랑 이·미용권"으로 한다)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, 이용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. <개정 2022. 12. 15.>

- ② 군수는 매년 이 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12. 15.>
- ③ 장수사랑 이·미용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2. 15.> [제목개정 2022. 12. 15.]

제5조(지급시기) ① 군수는 지원금을 매년 1월 1일(이하 "지원기준일"로 한다)부터 지급하되,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22. 12. 15.>

- ② 군수는 장수사랑 이·미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, 읍면장은 장수사랑 이·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. 다만, 장수사 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. <신설 2022. 12. 15.>
- ③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12. 15.>
- ④ 지원대상자가 장수사랑 이·미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이·미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. <신설 2022. 12. 15.>

제6조(이·미용권 사용) ① 장수사랑 이 · 미용권은 군 내 장수군 노인 이 · 미용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 ·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,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잔여 지원금은 반납한다. <개정 2022. 12. 15. >

② 장수사랑 이·미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, 이·미용업소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15.>

제7조(협약체결) 군수는 군내의 이·미용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노인 이·미용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2, 12, 15,]

제8조

삭제 <2022. 12. 15.>

제9조(환수처리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, 이·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- 1. 이·미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미용업소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3.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<신설 2022. 12. 15.> 제10조
- · 삭제 <2022. 12. 15.>

제11조(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군수는 장수사랑 이·미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2. 12. 15.]

제12조(준용) 장수사랑 이·미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15.]

부 칙 <제2288호, 2018.9.1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634호, 2022. 12. 15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